

심의인증필증

□ 심 의 필 번 호 : 제251219-중-77220호

귀하께서 신청하신 의료광고에 대하여 심의필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방법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보, 전단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내용과 동일한 글자크기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및 “심의필번호”를 광고문상 단 또는 하단에 표시

(예)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70401-중-1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에 광고하는 경우는 경우에는 광고내용 글자의 4분의1크기 이하로 하되 현수막 전체를 촬영하였을 때 육안으로 인식이 가능한 크기로 “심의필번호”를 현수막 우측하단에 표시

(예) “제070401-중-1호”

3. 인터넷 검색어광고와 한줄광고의 경우에는 상기 1호와 2호의 표시방법 외에 다음과 같은 축약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한12345

4. 음성광고물은 음성에 의해 심의 받은 사실은 삽입한다.

(예) 본 광고는 제180928-중-34567호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를 받았습니다.

※ 상기내용의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광고로써 위의 심의필번호 및 심의필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기 의료광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절차가 필요치 않으나, 이때에도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내용 변경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가 진행되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사)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